

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 
시간제취업 가이드

업데이트 날짜 2026. 1. 26

한림대학교 글로벌교류센터

한국에서 외국인유학생 비자만으로 영리,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, 시간제 취업 또는 자격 외 활동에 대한 **사전 허가**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

□ 제출 서류

No	필수서류	Notes
1	신청서	여권사진(34 x 45mm) 첨부 <a href="#">다운로드 링크</a>
2	여권	
3	외국인등록증	
4	시간제 취업 확인서	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서명
5	재학증명서	CLC(Campus Life Center) 3F 학생지원팀 방문 또는 기계 발급
6	성적증명서	
7	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	TOPIK 점수 * 유효한 성적표 (만료된 성적표 불인정) * 아래 표 참조 (보유 급수에 따라 근무 허용시간 제한이 다름)
8	사업자등록증 사본	제조업, 건설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,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추가
9	사업자(고용주) 신분증 사본	
10	표준근로계약서 사본	시급, 근무내용, 근무시간이 포함된 것

■ 근무 허용시간

학위과정	학년	TOPIK 급수		근무 허용 시간	
				주중	주말, 방학
학부	1~2	TOPIK 3급 이상	X	10 시간	
			O	25 시간	무제한
	3~4	4급 이상	X	10 시간	
			O	25 시간	무제한
대학원	전체	4급 이상	X	15 시간	
			O	35 시간	무제한

※ 한림대는 현재 인증대학으로서, 그 기준에 따름 (추후 변동될 수 있음)

## ■ 주의사항 Attention

### 1.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

[전자민원 신청 < 전자민원 < 하이코리아](#) (로그인 후 이용)

#### 전자민원

1.민원선택	2.인증	3.민원작성	4.민원신청결과
▽ 재입국허가(복수)			<input type="radio"/>
▽ 비전문취업(E-9) 근무처변경허가			<input type="radio"/>
▽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			<input type="radio"/>
▽ 재외동포(F-4)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			<input type="radio"/>
▽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			<input type="radio"/>
▽ H-2의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신고			<input type="radio"/>
▽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			<input type="radio"/>
▽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(가사·육아 분야 등)			<input type="radio"/>
▽ 가사·육아 분야 등 활동 개시 신고			<input type="radio"/>
▽ 유학생(D-2) 및 어학연수생(D-4-1) 시간제취업 허가		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

#### 유학생(D-2) 및 어학연수생(D-4-1) 시간제취업 허가

-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- 시간제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장에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, 시간제 취업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시간제취업 업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시간제취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국번없이 1345)로 문의하시거나,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마당 > 출입국/체류안내 > 외국인의 체류 >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전자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(국번없이 134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2. 동시에 2개 업체 초과 시간제취업이 불가함